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64호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조 례

- 조 례 제11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 조 례 제11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1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10. 1. 1일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장애를 장애등급』으로 변경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 내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이 없는 자치법규로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사항 변경 (제5조제1항)
 -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4년 3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1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제1호, 제2호, 제3호의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를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로 “총무위원회 7명 이내”를 “총무위원회 8명 이내”로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이내”를 “사회도시위원회 8명 이내”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제3호가목의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를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남동체육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 (인천광역시조례 제5325호, 2014.2.26.)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2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7명 이내
⇒ 각 8명 이내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6조)
 - 총무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경제환경국, 안전행정국,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남동체육관